

인천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22나5355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어

담당변호사 김기범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엘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주하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6. 30.

제1 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가소91380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23.부터 2023. 6. 30.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 12.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4. 2.부터, 9,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8.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인 C에게 150,000,000원 상당을 투자했던 사람이고, 피고는 인천 남동구 D,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운영되고 있는 라이브카페(이하 '이 사건 라이브카페'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C는 2020. 5. 13. 원고의 투자금 정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와 피고의 다른 형제인 G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가. C는 2021. 5. 13.까지 원고에게 2억 2550만 원을 지급한다.

나. C는 2억 2550만 원을 2021. 5. 13. 이전에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시 2층 E호 운영을 조건 없이 포기하고 인수인계한다.

단, C가 가항의 기간을 위반할 경우 금 2억 2550만 원에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운영시 해당사항 없음)

(연장 기간은 서로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2. G, 피고는 위 1.항에 기재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다.

3. 가. 원고는 C로부터 위 2억 2550만 원을 변제받을 때까지 인천 남동구 D소재 H호텔 내에 있는 I상가 2층 E호를 (F) 운영할 권리가 있다. (사업자 피고)

나. E호에 대한 운영자로서 피고 사업자에 대한 세금 및 제세공과금과 운영에 대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호 운영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도 함께 책임진다.)

다. C는 제3자 명의로 I상가 2층 E호에 관한 사업자명의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2억 2550만 원 변제받을 때까지 위 사업장을 운영할 권리가 있다. (명의변경 시 원고의 동의조건)

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이 사건 라이브카페의 영업이 중단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위와 같은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소상공인 버팀목 자금」등 자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2021. 1. 12. 3,000,000원, 2021. 4. 2. 5,000,000원, 2021. 8. 30. 9,000,000원, 합계 17,000,000원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하 ‘이 사건 재난지원금’이라 한다)으로 지급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 다른 기재 없는 한 이하 동일하다), 제1심법원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기하여 C 및 피고를 비롯한 연대보증인들(이하 합쳐 ‘피고 등’이라 한다)로부터 위 약정금 225,500,000원을 변제받기 전까지 이 사건 라이브카페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난지원금 역시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이 사건 재난지원금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일정 기간 이 사건 라이브카페 운영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 또는 일정 시기까지 위탁 운영을 하다가 점포를 인도하고 퇴거할 의무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 사업자등록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세금과 전기세도 피고가 납부하였고, 반면 원고는 관련하여 임차료를 부담한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재난지원금을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발생

1)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갑 제2호증, 을 제1, 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르면, 원고는 C로부터 225,500,000원을 변제 받을 때까지 이 사건 라이브카페를 운영할 권리가 있고(제3조 가항), 대신 원고는 이 사건 라이브카페의 운영자로서 제세공과금 등 이 사건 라이브카페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 및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며(제3조 나, 다항), 원칙적으로는 225,500,000원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가 가산되어야 하나 원고가 이 사건 라이브카페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1조 나항 단서).

이러한 약정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결국 원고는 C로부터 225,500,000원 변제 받을 때까지 이 사건 라이브카페를 운영하면서, 영업을 위한 각종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되, 동시에 피고 등으로부터 정액의 약정이자를 지급 받는 것에 대신하여 이 사건 라이브카페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을 원고가 가져가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나) 재난지원금 관련 규정상, 절차 진행의 명확성을 위해 대외적으로 사업자명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재난지원금의 지급취지 자체가 코로나19 확산 및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매출이 감소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해보면, 내부적으로 이 사건 재난지원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해져야 할 문제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손님이 줄고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이 사건 라이브카페의 영업이

중단되면서, 이 사건 라이브카페의 매출액이 급감한 반면 직원의 급여 등 영업을 위한 고정비는 계속 지출되면서 상당 기간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에 비춰볼 때 이러한 손해 또는 수익의 감소는 결국 해당 기간 이 사건 라이브카페를 운영하는 원고가 감내해야 한다.

라)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라이브카페 관련 세금 및 전기세를 납부하지 않아 피고가 일부 직접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관련 약정금 소송에서, 해당 세금 및 전기세의 최종적인 부담자는 원고이고, 피고가 대신 납부한 금액 상당은 원고가 피고 등으로부터 변제받을 약정금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정리할 부분이라 판단되었는바[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8737, 현재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023나10663이 진행 중이다], 세금 및 전기세와 같은 고정비용 지출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것은 원고이다.

마) 재난지원금 관련 공고를 보면 재난지원금의 지원목적이나 내역 구분으로 임차료에 관한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해당 기재는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대표적인 고정비용의 예시로 언급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를 들어 해당 재난지원금 상당액이 반드시 임차료 지출액에 대한 벌충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그 용도가 한정되어 지급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더하여, 이 사건 라이브카페가 영업 중인 점포는 주식회사 J이 소유하고 있고, 주식회사 J은 C가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이 사건 약정서상 다른 연대보증인인 G가 대표이사이고 C가 사내이사인바,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까지 함께 고려하여 살펴볼 때, 원고가 임차료를 직접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난지원금 중 일부가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바) 반면, 피고 등은 원고가 이 사건 라이브카페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225,500,000원에 대한 연 12%의 비율에 따른 이자지급 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고,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명령 등에 따라 이 사건 라이브카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거나 매출이 급감한 기간에도 동일하다.

2) 이러한 인정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 및 그에 따른 소상공인의 수익 감소분을 보충해주기 위해 지급되는 이 사건 재난지원금은, 해당 기간 이 사건 라이브카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기간의 수익과 손해를 모두 자기의 계산으로 가져가는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라이브카페의 사업자명의로 자신의 앞으로 되어 있음을 기회로 이 사건

재난지원금을 수령하는 이득을 얻었고, 그로 인해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실을 입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액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범위

1) 관련 법리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민법 제748조), 그 받은 이익이 금전인 경우에는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는바(민법 제749조 제1항),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의 지급까지 구하기 위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측에서 수익자의 악의 사실까지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므로(민법 제749조 제2항), 이자의 반환을 소 제기 이후부터 구할 경우에는 따로 악의사실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2) 받은 이익의 범위

피고가 3차례에 걸쳐 총 17,000,000원(= 2021. 1. 12. 3,000,000원 + 2021. 4. 2. 5,000,000원 + 2021. 8. 30. 9,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그 받은 이익이 금전이 경우 현존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받은 이익인 17,00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

3) 이자 부분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재난지원금을 각 수령한 날로부터의 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신청 등 절차를 피고가 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라이브카페 운영을 맡은 이후에도 피고가 세금이나 전기세 등을 납부하기도 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후 임의 소비하였음을 들어 원고가 피고를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재난지원금을 각

수령할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므로, 그 이후부터의 이자 발생에 관하여는 따로 원고가 피고의 악의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상당액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송달되어 악의 수익자로 간주된 2021. 9.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3. 6.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차 승 환, 판사 봉 지 수, 판사 박봄빛누리